

#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Functions and Reassigning the Number of Wooden Printing 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

金 聖 洙 (Kim, Sung Soo)\*\*

##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해인사대장경판 수량 재지정의 |
| 2. 해인사대장경의 근원    | 문제                 |
| 3. 해인사대장경판의 기능 및 | 5. 결 론             |
| 가치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논문은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총수량(總數量)의 재지정에 관하여 논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해인사대장경의 뿌리(根源)는 전쟁을 진압한 대장경인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 고려 初雕大藏經)에 있음을 논술하였다. 그리하여 해인사대장경(再雕大藏經)은 진병대장경의 護國精神을 이어받아 판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기능 및 가치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그 결과, 해인사대장경판의 기능은 ① 國家守護의 기능, ② 三藏結集의 累加性的의 기능, ③ 대장경으로서의 완결성(完結性)의 기능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제4장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총수량(總數量) 문제를 논급하였다. 그 결과, 해인사대장경판은 ‘원판분류경판 81,234판’과 ‘보각경판 118판’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총수량(總數量)은 ‘81,352판’으로 집계할 수 있었다.

要語: 해인사 대장경판, 총수량(總數量),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 初雕大藏經), 고려 재조대장경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30일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사 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성격과 가치』에서 발표된 필자의 원고에, 유부현·박용진·최연식·최연주 교수의 토론 내용을 수용하고 기타 자료를 보강하여, 대폭 수정된 원고를 한국서지학회 논문투고 양식으로 전환한 연구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5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1일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functions and reassigning the number of the wooden printing 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hapter Two, it was discussed that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 had its roots in the *Jinbyong Tripitaka Koreana*, that is,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which helped defend Goryeo from the war.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 had been carved to inherit the spirit of defending the country represented in the *Jinbyong Tripitaka Koreana*.

Second, in Chapter Three, the functions and significance of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 were discus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 had ① the function of defending the country, ② the function of cumulating the extant collection of Buddhist treatises, laws, and scriptures, and ③ the function of completing it as the most comprehensive version of the *Tripitaka Koreana*.

Third, in Chapter four, the whole quantity of wooden printing 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 was discussed. It was computed that 81,234 pieces of the original woodblocks and 118 pieces of the supplementary woodblocks made a total of 81,352 pieces of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

Key words: wooden printing 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stored in Haeinsa(海印寺大藏經板), the whole quantity, the *Jinbyong Tripitaka Koreana*(鎭兵大藏經), the *Jaejo Tripitaka Koreana*(高麗 再雕大藏經)

## 1. 서론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이하 ‘해인사대장경판’으로 약칭함)’<sup>1)</sup>은 현존하는 목판대장경 중 世界最古의 역사 및 정확한 내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드날리는 문화재로서, 1962년에 國寶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 UNESCO <世界記錄遺産>으로 등재되었다.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해인사 세계기록유산’에는 ‘고려대장경판(팔만대장경)’ 뿐만 아니라 ‘해인사 사간장경판’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의 현황을 보면 ‘해인사 사간장경판’은, 극히 일부의 경판만 국보나 보물로 부분 지정되었을 뿐, 전체 사간장경판의 국가문화재 지정 및 보존의 문제는 현재까지 소외(疏外)되어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sup>2)</sup>

한편, 해인사대장경판이 국보로 지정될 당시(1962)에 등재(登載)된 대장경판의 총수량(總數量)은 ‘81,258매(枚: 板)’이었다. 이러한 경판 숫자는 1915년 일본인 오다 간지로(小田幹次郎)가 조사한 숫자가 그대로 공인(公認)된 것으로 알고 있다.<sup>3)</sup>

다행스럽게도, 오랜 세월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근래에 ‘해인사고려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수행되어, 해인사대장경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sup>4)</sup>가 발간되었다. 이러한 두 사업의 내

---

1) 해인사대장경판: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 요.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1,00320000,38&queryText=\(\(V\\_KDCD=11\)\)%20<and>\(\(\(V\\_NO%20>=32\)<and>\(V\\_NO%20<=%209999\)\)\)](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1,00320000,38&queryText=((V_KDCD=11))%20<and>(((V_NO%20>=32)<and>(V_NO%20<=%209999))))

2) 게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 ‘해인사 장경판전’ 사항에는 대장경판을 보존하고 있는 藏經板殿(國寶 第52號)인 ‘法寶殿 및 脩多羅殿’ 뿐만 아니라 ‘東·西寺刊殿’도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指目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이 ‘동·서 사간전’은 국가문화재 지정에서 현재까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3) 해방 후 우리 정부도 1962년에 팔만대장경을 國寶로 지정하면서, 경판 전체 숫자에 대한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그대로 위의 숫자를 적용함으로써 한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에 따라, 이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경판 수량(總數量)을 정확하게 파악·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 재지정’이라는 현안문제와 해인사대장경의 근원 및 기능과 가치 등을 考究해 보고자 한다.

## 2. 해인사대장경의 근원

周知하는 바와 같이, 해인사대장경판은 13세기 고려왕조의 대몽항쟁(對蒙抗爭) 과정에서 판각(1236-1251)·조조(雕造)된 것으로서, 당시 고려인들의 역사문화와 애국심·신앙심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sup>4)</sup>

해인사대장경 판각의 動機와 배경 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史料는 李奎報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을 들 수 있다.

○大藏刻板君臣祈告文(대장경판을 새기면서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祈告하는 글: 丁酉(高宗 24; 1237)년에 行함). “국왕 謹[啟: 高宗]는 삼가 ... 文武百官들과 더불어 ... 諸佛菩薩과 天帝釋을 비롯한 三十三天의 一切護法靈官께 祈告합니다! ... 이런 연유로, 그들[達旦: 蒙古兵]이 닥치는 곳마다 佛像이고 梵書고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불살라 없애고 말았으며, 符仁寺에 소장된 대장경板本마저도 또한 남김없이 불태워버렸으니, 오호라! 여러 해의 功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고, 국가의 큰 大寶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재상 및 문무백관들과 더불어 큰 願(願)을 말하여, 이미[1236: 丙申年] [대장경을 刻板하는] 담당 부서(署)를 설치하고 벼슬아치(官司)들을 두어서, 그 일을 경영하게 하였습니다.

4) 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합천: 해인사, 2015). A4 용지 854쪽 분량의 보고서로, 보고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해당 부분의 수많은 사진 도판을 함께 수록하면서 작성된 상세한 보고서임.

5) 또한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世界遺産적인 가치는 ‘현존하는 世界最古의 목판대장경’이라는 역사적 가치와 내용의 완벽함, 고도로 정교한 인쇄술의 극치를 엿볼 수 있는 세계불교 경전 중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경전이라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해인사대장경이 보존되고 있는 藏經板殿은 대장경의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15세기경에 건축된 건축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보존과학 소산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초창의 단서(草創之端)를 살피건데, 옛날 ‘현종 2년(1011: 辛亥)’의 일이 옳습니다. 契丹主(거란의 왕)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략(來征)하여,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병은 오히려 松岳城(개성)에 주둔하여 물러가지 않으므로, 현종은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無上大願을 발하여 大藏經 板本을 刻成할 것을 맹서(誓)한 후에야 비로소 거란군사(丹兵)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 그렇다면, 대장경도 하나(一也)이고, 선후의 雕板도 마찬가지(一也)이며, 임금과 신하의 發願도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데(一也), 어찌 유독 그때의 거란병(契丹兵)만이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 몽고(達旦)는 그렇지 아니하겠습니까? ... 이제 至誠으로 발원하는 바가 前朝에 부끄러워 할 것이 없사옵는 즉, 업드려 비옵나니, 諸佛聖賢과 三十三天께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원을 들으셔서, ... 완약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달아나게 하여, 다시는 이 강토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 국운(三韓國祚)이 영원무궁케 하소서! ... 간곡히 기도하오니 부디 굽어 살피소서!<sup>6)</sup>

라 하였다. 이 기고문에서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1011년에 현종은 여러 신하와 함께 無上大願을 발하여 대장경의 판각을 맹서하자 거란 군대가 스스로 물러갔음을 밝히고, 1237년 당시 이미 불타버린 大藏經을 다시 복원·조조(雕造)함으로써 몽고군 또한 물리쳐 줄 것을 하늘에 기도하고 있다. 이처럼 해인사대장경 조조의 동기에 대하여, ‘그때의 거란 군대가 스스로 물러간 것처럼, 지금의 몽고군(達旦兵) 또한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이에 至誠으로 발원하여 祈禱드린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초조대장경의 조조를 발원한 연후에야 비로소 거란군이 물러간 것처럼, 몽고군 또한 위의 발원 이후에는 반드시 물러갈 것을 기원하는 데서 재조대장경 조조의 동기가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고문에서 ‘거란군과 몽고군이라는 각각의 외적퇴치(外敵退治)를 위한 2차에 걸친 대장경의 판각’이라는 위대한 誓願과 精神에 대하여, 日帝의 학자들은 ‘불교적 迷信’ 등으로 평가절하하거나 왜곡시켰다.<sup>7)</sup>

6) ①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제25권 18-20(張), 雜著. 大藏刻版君臣祈告文(丁酉年行).

② ‘[ ]’ 안의 내용은, 필자가 문맥상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

<http://k5000.nurimedia.co.kr/pContent/?svcid=KR&proid=5&arid=274&ContentNumber=1210&pagenumber=1247>

[http://k5000.nurimedia.co.kr/pContent/Content\\_preview.asp?arid=274&proid=5&pageNumber=1247&ViewType=realimage&imgname=](http://k5000.nurimedia.co.kr/pContent/Content_preview.asp?arid=274&proid=5&pageNumber=1247&ViewType=realimage&imgname=)

7) ① 常盤大定은 초조대장경의 조성 배경에 대하여, “암묵간에 북방 거란의 刻藏에 拮抗하

이에 필자는 「고려사」 등 正史의 역사서들을 상세 검색하여 본 결과, 「고려사」 제129권, 열전 제42, 최충헌 條에서 ‘高宗 42年(1255)에 高宗이 [(崔怡의 아들에)게] 내린 조서(詔書)’의 기록을 검색·주목하였다.

\* 崔忠獻[崔怡·崔沆·崔瑄]. ○ 崔忠獻初名鸞牛峯人父元浩上將軍 … [高宗]四十一年 … 明年王詔曰, 亘爽相周蕭曹佐漢君臣相資古今一揆 晉陽公崔怡當聖考登極之日寡人即祚以來推誠衛社同德佐理越 辛卯邊將失守蒙兵闖入神謀獨決截斷群議躬奉乘輿卜地遷都不數年間宮闈官廡悉皆營構憲章復振再造三韓且 歷代所傳鎮兵大藏經板盡爲狄兵所焚國家多故未暇重新別立都監傾納私財彫板幾半福利邦家功業難忘 嗣子侍中沆迨家業匡君制難大藏經板施財督役告成慶讚中外受福 … (\* 최충헌[최이·최항·최의의 기사 첨부] ○ 최충헌의 처음 이름은 최란(崔鸞)이며 우봉(牛峯) 사람이다. … [高宗]41년(1254)에 … 그 다음해[1255]에 왕이 [최항에게] 조서(詔)를 내려 말하기를, “… 진양공 최이는 나의 선친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즉위한 이후 충성을 다하여 사직을 보위했고 보좌의 사명을 다했다. 신묘(1231)년에 변방의 장수가 국토를 수비 못해서 몽고병(蒙兵)이 침입했을 때에는, 현명한 전략을 홀로 결정하고 못사람의 시비를 물리치면서 몸소 승여(乘輿)를 받들고 터를 잡아 천도하였다. 그리고 수년 사이에 궁궐과 관아를 모두 건설했으며, 국법을 진흥시켜, 우리나라를 다시금 바로잡히게 하였다. / 또 역대로 전해 내려오던 鎮兵大藏經 經板이 적병(狄兵: 蒙兵)에 의하여 모두 불타 버리고, 나라에서는 사고가 많아서 다시 만들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최이는 도감(都監)을 따로 두고, 자기 재산을 바쳐서, 판각 조각을 거의 절반이나 완료하여 나라에 복을 주었으니, 그 공적은 잊기 어렵다. …”)<sup>8)</sup>

고, 국력에 있어 뒤지나 문화상으로 우월하다는 포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해석하고, 아울러 이규보의 기고문에 나타난 ‘외적(거란병) 격퇴의 기원은 미신적 분자가 혼입된 것(常盤大定, “大藏經彫印攷,” 『哲學雜誌』, 28-321(1913), 1164.(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21. 再引用)).’으로 폄하하고 있다.

② 池內宏은, 초조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현종은 그의 考妣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9년으로부터 12년에 걸쳐 開豐郡에 化寺를 창건하고 … 그 동기[대장경 조조]를 현종이 고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현화사에 藏經板을 施納코자 하는 데 있었던 것(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 『東洋學報』, 第13卷 3號(日 大正12年(1923) 8月), 307-362.(김두중, 『한국 고인쇄기술사』, 61. 재인용)).’으로 왜곡시켰다.

8) 『高麗史』, 第129卷, 列傳第42, 崔忠獻[崔怡·崔沆·崔瑄] 條. (高宗41年條) <http://www.krppia.co.kr/pContent/?svcid=KR&proid=1&arid=3&ContentNumber=2111&pageNumber=2111>

라고 하는 ‘역사의 진실(史實)’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高宗은 초조대장경을 “鎭兵大藏經”, 즉 ‘전쟁(兵: 전쟁 병)을 진압(鎭)한 대장경’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특히 주목(注目)할 수 있다. 즉, 고종이 1237년(丁酉)에 이규보에게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을 쓰게 하였을 때, 高宗을 비롯한 13세기의 고려의 전 국민들은 ‘초조대장경의 조조(雕造)야 말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게 하였음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장경을 ‘鎭兵大藏經’이라고 지칭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9)</sup>

위와 같이, 해인사대장경(再雕大藏經)은 鎭兵大藏經(초조대장경)의 護國精神(國難克服)을 이어받아 관각되었으며, 조선 초기에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이안(移安)되어 현재까지 대장판전(海印寺大藏板殿) 내부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존(保存)되고 있다.

### 3. 해인사대장경판의 기능 및 가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인사대장경의 뿌리(根源)는 鎭兵大藏經(초조대장경)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병대장경의 첫 번째 기능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란(契丹)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하는 ‘국가수호(國家守護)의 기능’에서 발원(發願)되었다. 해인사대장경 또한 몽고(元)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발원·관각되었음에 진병대장경의 국가수호의 기능을 계승·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장경의 일반적인 기능<sup>10)</sup>은 ‘삼장(三藏)의 결집(結集)’에 있다. 삼장의 결집은 경·율·논 삼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불전(佛典)들이 순차적으로 누가(累加)

9) 그리하여 필자는, 위의 ‘鎭兵大藏經’이라는 용어의 端緒에 입각하여,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장소(發願地)는 청주행궁(淸州行宮)이며, 그 발원일자(發願日)는 1011년(현종 2) 음력 2월 15일 임(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5-96.)을 규명한 바 있다.

10) 기능(機能)이라 하는 것은 ‘하는 구실(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작용(作用: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장경의 기능’이란 ‘대장경으로서의 본연(本然)의 구실이나 작용’을 말한다.

적으로 입장(入藏)되면서 축적(蓄積)되는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곧 ‘대장경의 누가성(累加性) 기능’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周知하는 바와 같이, 지금의 해인사대장경판은, ① 12세기에 완성되었으나 몽고군에 의하여 소실(燒失)된 鎭兵大藏經을 다시 復元하여 판각하고, ② 高宗 때의 再雕時에 새로 入藏시킨 원판(元板: 原板)류, ③ 고려시대에 대장도감 등에서 판각되고 조선시대에 편입된 보유경판(補遺經板), 그리고 ④ 조선시대 등에서 보각(補刻)된 경판(補刻經板) 등이 모두 어우러져 대장판전에 안치되어 있다. 이같이 해인사대장경판은 ‘시대적인 누적성(累積性)’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해인사대장경판은 이와 같은 4종류의 경판들을 총체적(總體的)으로 포괄(包括)함으로써<sup>12)</sup> ‘대장경으로서의 완결성(完結性)<sup>13)</sup>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즉 대장경으로서의 ‘완결성의 순기능(順機能)’<sup>14)</sup>을 온전하게 발휘하고 있다.<sup>15)</sup>

해인사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판 중 世界最古이며, 그 교감(校勘)이 엄정하여, 19·20세기 대장경의 신활자본에 의한 간행에서 일본 ‘『大日本校訂大藏經(縮刷藏: 1881-1885)』이나 『大正新修大藏經(大正藏: 1924-1934)』의 原本(底本: 原稿)이 되었다’<sup>16)</sup>는 점에서 그 큰 의의가 있다.

11) 해인사대장경에는 三藏 이외에,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유통되던 여러 禪書와 章疏 등의 補遺板들이 累加됨으로써 이른바 ‘第4藏’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 해인사 대장경의 근원인 鎭兵大藏經(고려 초조대장경)의 목록인 『大藏目錄』의 분류 자체가 경전의 板刻 및 印本이 나오는 순서대로 누가식(累加式)으로 편입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대장목록』은 ‘函次別 卷數, 印紙數, 書名과 卷次, 譯撰者, 歷朝名, 僧名, 역찬표시’의 차례로 기술되어 있고, 판각 위주로 略述되어 있지만, 당시까지 漢譯正藏의 판각목록으로서 가장 대규모의 포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13) 完結性: ‘완전하게 끝을 맺는 성질’을 의미한다.

14) 順機能: 그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작용하는 바람직한 기능’을 말한다.

15) ‘대장경의 순기능’이라 함은 대장경판의 훼손이나 유실이 없이 完全無缺하고도 穩全한 保存과 그에 따른 대장경의 印出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16) 유부현, “대정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과의 관계,” 『2015년 한국서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일시: 2015년 11월 14일(토),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주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한국서지학회, 37-38. 참고. ‘縮刷藏의 지침서인 <大藏經對校綱領>에 ‘今藏以麗本爲原稿 姑假明本. …’이라고 明記하고 있고, 縮刷藏의 <凡例>에서는 ‘今藏以高麗藏爲原本 對校以宋元明三本’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大正藏에서

게다가 해인사대장경판은 鎭兵大藏經을 復原하였고 진병대장경은 開寶勅板大藏經(蜀板)을 모범(模範)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인사대장경은 최초의 漢文大藏經인 北宋棺板大藏經(蜀板)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13세기 당시의 再雕 때에는 거란대장경(契丹大藏經)과의 對照校訂을 거쳤기 때문에 高麗本(해인사대장경)을 보다 豊富하게 하고 正確하게 하였다<sup>17)</sup>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인사대장경판을 ‘국가문화재’ 내지 ‘국가문화유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유물 그 자체를 이른바 ‘죽은 유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까지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정신적인 문화재로 볼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4. 해인사대장경판 수량 재지정의 문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2년 12월 20일에 지정된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의 총수량(總數量)은 ‘81,258매(枚: 板)’이었다.<sup>19)</sup> 새천년을 맞이하며 1999~2008년에 <문화재청>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이 공동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수행되었고, 올해 초에는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최영호 교수)에 의하여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sup>20)</sup>가 간행되었다.<sup>21)</sup> 그리하여 이들 프

---

는 高麗本이 底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第48冊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6), 16. 참고.

18) 문화재단, 옛적부터 그 자리에 그냥 거기 있으나, 온 정성을 기울여 마음을 쏟아야 비로소 그 내재적인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부가가치(附加價值)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생겨 나오게 된 것이다.

19) 이 수량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일본인 오다 간지로(小田幹次郎)가 조사·집계한 숫자 그대로를 그 당시에 공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 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합천: 해인사, 2015). A4 용지 854쪽.

21) 그밖에 해인사대장경판에 관한 연구는, 경북대 서수생 교수가 평생에 걸쳐 팔만대장경판에

로젝트에 의하여 해인사대장경판의 구성 및 총수량 등이 정확하게 집계· 파악되었고 모든 데이터· 정보의 공유(公有)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집계· 파악한 대장경판의 정확한 총수량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 재지정 문제를 論究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사업’과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및 서수생· 남권희 교수의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판 연구」 등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하고, 연구와 논술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자료의 데이터들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1>의 ‘해인사대장경판의 시기별 경판조성 현황 및 개별 보각경판목록’과 같다.

이제 <표 1>의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인사대장경판을 원판분류경판과 보각경판으로 구분하여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 4.1 원판 및 원판분류경판

첫째, <표 1>에서 ‘元板(原板)’으로 표기한 경판은, 13세기 중엽에 설치된 ‘<大藏都監> 및 <分司大藏都監>’<sup>22)</sup>에서 판각· 조성된 경판 종류로, 이른바 ‘大藏板’을 지칭하고 있다. 한편 원판으로 분류한 경판, 즉 ‘원판분류경판’ 속에는 해인사대장경의 入藏目錄인 「대장목록」에도 記入되어 있지 않은 불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補遺板’ 또는 ‘補遺藏板’들도 포함되어 있다.<sup>23)</sup>

- 
- 대하여 연구한 내용이,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판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라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 22) 고려는 이른바 제조대장경(현 해인사대장경)을 판각하기 위하여 1236년(高宗 23)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였다. 本司는 피난 도읍지인 江華에 두고, 分司는 晋州 관내인 南海縣에 두어 판각을 분담 착수하였다.
- 23)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13세기 중기 高宗 당시에는 「대장목록」에 수재(收載)된 諸經을 판각한 것, 즉 “[대장경 佛事가] 1236년 <대장도감> 등에서 착수되어 새겨진 대장경을 ‘正藏’이라 하고, <분사대장도감> 등에서 崔怡가 私財를 희척(喜擲) 하고 많은 신자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관한 고찰

<표 1> '국보 제32호, 海印寺大藏經板'의 시기별 경판조성 현황 및 보각경판목록

분류	조성 시기	해당 경판	경판 수량	비고
元板(原板) 및 원판분류경판	1236~1251년(고종38) 및 13세기 중엽	· 大藏板 <sup>24)</sup> 의 총1,498종의 경전 · 보유판의 14종	81,117판 <sup>25)</sup>	
	1503년(연산군9)	『에념미타도량참법』 <sup>26)</sup> 권1~10	114판 <sup>27)</sup>	보유판 포함
	1865년(조선 고종2) 乙丑板	『補遺目錄』 1권, 1판 양면 <sup>28)</sup>	1판 <sup>29)</sup>	보유판 포함
소계 1	전체 1,514경		81,232판	
補刻經板	1381(우왕7)~간경도감 (1461-1471년) 운영전후	아래 목록A 참조	30판	
	무진년(戊辰年: 戊辰板)	아래 목록B 참조	2판	
	을유년(乙酉年: 乙酉板)	아래 목록C 참조	1판	
	조선시대	아래 목록D 참조	34판	
	조선후기	아래 목록E 참조	15판	
	1915년(乙卯板)	아래 목록F 참조	18판	
	1937년(丁丑板)	아래 목록G 참조	18판	
소계 2			118판	
元板	1245년(高宗32: 乙巳)	『內殿隨函音疏』 490권1장, 2장. 490권3장.	2판	보물 제1,806호 (2013..지정)
소계 3			2판	
총계	소계 1 + 2 + 3		81,352판	

들의 회사를 받아 補遺藏經을 이룩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副藏(보유장경: 보유판)'은 조선 고종 2년(1865)에 印經과 연구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새로 함차명을 부여하며 편입한 것이요, 고려 고종 당시에 개판한 것은 아니다(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판 연구』, 203.)"라는 견해도 있다.

- 24) 대장판(大藏板): 13세기 중엽 [현재의] 해인사개장경판의 판각사업 때 대장도감·분사도감에서 조성된 경판 종류로 元板(原板)에 해당함. '도감판(都監板)'이라고도 칭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 간경도감(刊經都監: 1461 설치)의 조성경판과 구별하기 위해 명명함(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4).
- 25) 81,117판: 이 숫자는 '1999~2008년 문화재청·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이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사업' 등에서 직접 그 수량을 집계(cóunting)하여 제시하고 있는 수치임.
- 26) 원판을 壬戌年(1502)에 해인사에서 착수하여 이듬해 癸亥年(1503) 晚春 이후에 重板 佛事

**[ 개별 보각경관의 시기별 조성목록 ]<sup>30)</sup>**

- A. 1381년(우왕 7)부터 조선 초기 刊經都監 운영 전후의 보각경관: 30판
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 제1,2장 원판분류경관<sup>31)</sup>
  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 제1장(單面) 중북분류경관<sup>32)</sup>(중복4)
  3. 「대반야바라밀다경」 권7, 제4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5)
  4. 「대반야바라밀다경」 권76, 제20,21장 원판분류경관
  5. 「대반야바라밀다경」 권78, 제23,24장 원판분류경관
  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9, 제16,17장 원판분류경관
  7.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59, 제3,4장 원판분류경관
  8.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0, 제23,24장 원판분류경관
  9.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6, 제21장(단면) 원판분류경관
  10.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8, 제19,20장 원판분류경관
  1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80, 제11,12장 원판분류경관
  1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4, 제19,20장 원판분류경관
  13. 「대승비분다리경」 권1, 제28,29장 원판분류경관
  14. 「대승광백론석론」 권4, 제15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80)
  15. 「출요경」 권16, 제7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86)
  16. 「집고금불도론형」 권정(4), 제44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88)
  17. 「속고승전」 권27, 제17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91)
  18. 「보리행경」 권2, 제11,12장 중북분류경관(중복92)
  19. 「법원주림」 권53, 제30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94)
  20. 「법원주림」 권66, 제17,18장 중북분류경관(중복95)
  21. 「종경록」 권62, 제10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99)
  22.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 권1, 제8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100)
  23.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 권3, 제24장(단면) 중북분류경관(중복101)

를 廻向하였다. 유려한 松雪體로, 조선 초기의 간본은 송설체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書風을 따라 해인사에서 중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208).

- 27)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194.
- 28) 원판분류경관에 해당함. 조선말에 조조된 보유목록판은 솔체축정의 느낌이 있으며, 당시 고종 乙丑(1865)에 비구 회일이 쓰긴 하였으나, 고려 당시의 대장경체와 비교하기 어렵다(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208).
- 29)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194, 199.
- 30) 이 목록은 ‘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북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824-830, 837-845.’에 제시된, ‘조사대상 경관의 조성시기 분류표’와 ‘중북분류경관 및 원판분류경관의 조성·보각시기에 대한 제1장 및 제2장의 同異 여부 비교’ 표들을 재정리하여 작성한 목록임.
- 31) 원판분류경관: ‘현재 원판과 함께 분류되어 보관하고 있는 경판 종류(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북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4.)’를 의미함.
- 32) 중북분류경관: ‘현재 중복1·2처럼 원판분류경관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경판 종류(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북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4.)’를 의미함.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관한 고찰

24. 『석화엄지귀장원통초』 권하, 제7,8장 중복분류경판(중복102)
25. 『화엄경탐현기』 권1, 제36장 및 권18, 제25장 중복분류경판(중복103)
26. 『화엄경탐현기』 권12, 제3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104)
27. 『화엄경탐현기』 권15, 제35장 및 권16, 제32장 중복분류경판(중복105)
28. 『화엄경탐현기』 권16, 제10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106)
29. 『화엄경탐현기』 권17, 제29,30장 원판분류경판
30. 『화엄경탐현기』 권17, 제59,60장 중복분류경판(중복108)

**B. 무진년(戊辰年)<sup>33)</sup>의 보각경판<sup>34)</sup>: 2판**

1. 『대반아바라밀다경』 권106, 제3,4장 원판분류경판
2. 『대반아바라밀다경』 권228, 제8,9장 원판분류경판

**C. 을유년(乙酉年)<sup>35)</sup>의 보각경판<sup>36)</sup>: 1판**

1. 『석화엄교분기원통초』 권10, 제9,10장 원판분류경판

**D. 조선시대의 보각경판: 34판**

1. 『대반아바라밀다경』 권2, 제1,2장 중복분류경판(중복2)
2. 『대반아바라밀다경』 권2, 제21,22장 원판분류경판
3. 『대반아바라밀다경』 권9, 제1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6)
4. 『대반아바라밀다경』 권10, 제12,13장 중복분류경판(중복9)
5. 『대반아바라밀다경』 권15, 제9,10장 중복분류경판(중복10)
6. 『대반아바라밀다경』 권15, 제9,10장 원판분류경판
7. 『대반아바라밀다경』 권22, 제16,17장 원판분류경판
8. 『대반아바라밀다경』 권24, 제15,16장 중복분류경판(중복16)
9. 『대반아바라밀다경』 권28, 제11,12장 중복분류경판(중복17)
10. 『대반아바라밀다경』 권34, 제5장(단면) 원판분류경판
11. 『대반아바라밀다경』 권37, 제9장(단면) 원판분류경판(원판11276)
12. 『대반아바라밀다경』 권37, 제10장(단면) 원판분류경판(원판11277)
13. 『대반아바라밀다경』 권38, 제8장(단면) 원판분류경판
14. 『대반아바라밀다경』 권39, 제7,8장 원판분류경판
15. 『대반아바라밀다경』 권42, 제7,8장 원판분류경판

33) 해당 經板의 좌변 중간 밖에 ‘戊辰年更刻海志(무진년에 刻手 해지(海志)가 이 경판을 다시 판각하였다)’라는 일종의 발원문이 역으로 음각되어 있는 경판을 의미함. 최영호 교수는 ‘이 무진년은 1381년(우왕 7) 이후부터 刊經都監의 운영 당시나 그 전후 사이로 짐작된다(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북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232.)’고 추정함으로써, 이른바 ‘後代 보각판(조선시대)’(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북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840.)으로 분류하고 있다.

34) 무진년의 보각경판은 ‘戊辰板’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35) 현존하는 『釋華嚴教分記圓通鈔』 권10, 제9·10장 가운데 중복분류판에는 각수나 발원문이 없다. 그러면서도 원판분류경판 제10장에는 좌변 안의 판미제 아래에 ‘광현(光(玄?))’이라는 각수자명이 양각되어 있으며, 우변 밖에는 ‘丁丑年出陸時 此闕失 與知識道元同/ 願開板入上乙酉十月日 首座沖玄(정축년 육지로 나올 때 이 경판을 잃어 버렸다. 지식 도원과 함께 발원하고 개관하여 입상하였다. 을유년 10월 모일 수좌 충현)’이라는 기록이 음각되어 있다(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북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462.).

36) 을유년의 보각경판은 ‘乙酉板’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1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6, 제23,24장 원판분류경판
17. 『대반야바라밀다경』 권67, 제3장(단면) 원판분류경판
18. 『대반야바라밀다경』 권69, 제24장(단면) 원판분류경판
19. 『대반야바라밀다경』 권96, 제14장(단면) 원판분류경판
20.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0, 제3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45)
2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6, 제5,6장 원판분류경판
2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9, 제16,17장 중북분류경판(중복48)
23.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22, 제12,13장 원판분류경판
24.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30, 제9,10장 원판분류경판
25.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0, 제23,24장 중북분류경판(중복59)
2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87, 제12장(단면) 원판분류경판
27.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88, 제15,16장 원판분류경판
28.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09, 제10,11장 원판분류경판
29.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09, 제20,21장 원판분류경판
30.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16, 제1,2장 원판분류경판
3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24, 제7,8장 원판분류경판
3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54, 제3,4장 원판분류경판
33.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06, 제7,8장 원판분류경판
34. 『불설미륵하생경』 단권, 제7,8장 원판분류경판

**E. 조선후기의 보각경판: 15판**

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9, 제3장(단면) 원판분류경판
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3, 제21,22장 원판분류경판
3.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 제1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28)
4.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44, 제19장(단면) 원판분류경판(원판12777)
5.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53, 제21장(단면) 원판분류경판(원판12897)
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62, 제1,2장 원판분류경판(원판13002)
7. 『합부금광명경』 권5, 제9,10장 중북분류경판(중복75)
8. 『마하승지율』 권33, 제24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82)
9. 『십승율』 권5, 제34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83)
10. 『속고승전』 권24, 제37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90)
11. 『신화엄경론』 권33, 제22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93)
12. 『불설비밀삼매대교왕경』 권2, 제8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97)
13. 『불설비밀삼매대교왕경』 권2, 제15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98)
14.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 제17,18장 중북분류경판(중복111)
15. 『예념미타도량참법』 권2, 제4,5장 중북분류경판(중복112)

**F. 을묘판(乙卯板: 1915년) 보각경판: 18판**

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1, 제13장(단면) 원판분류경판
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1, 제26,27장 원판분류경판
3.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3, 제12,13장 원판분류경판
4.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6, 제3,4장 중북분류경판(중복30)
5.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6, 제15,16장 원판분류경판
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67, 제9,10장 원판분류경판
7. 『대반야바라밀다경』 권68, 제2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38)
8. 『대반야바라밀다경』 권73, 제2장(단면) 중북분류경판(중복41)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관한 고찰

9.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26, 제19,20장 원판분류경판
10.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41, 제6장(단면) 원판분류경판
1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44, 제23장(단면) 원판분류경판(원판12780)
1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53, 제20장(단면) 원판분류경판(원판12896)
13. 『대승광백론석론』 권4, 제15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79)
14.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88, 제5,6장 원판분류경판
15. 『아비달마순정리론』 권7, 제17,18장 원판분류경판
16. 『출요경』 권25, 제17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87-1, 추가 경판)
17. 『집고금불도론형』 권정(4), 제44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89)
18. 『보리심이상론』 단권, 제6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96)

G. 정축판(丁丑板: 1937년) 보각경판: 18판.

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1, 제13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13)
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1, 제26,27장 중복분류경판(중복19)
3.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3, 제12,13장 중복분류경판(중복20)
4. 『대반야바라밀다경』 권49, 제6장 및 권73, 제2장 중복분류경판(중복27)
5.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6, 제3,4장 중복분류경판(중복29)
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6, 제15,16장 중복분류경판(중복32)
7. 『대반야바라밀다경』 권67, 제9,10장 중복분류경판(중복36)
8. 『대반야바라밀다경』 권68, 제2장 및 『집고금불도론형』 권4, 제44장 중복분류경판(중복37)
9.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26, 제19,20장 중복분류경판(중복68)
10.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41, 제6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52)
1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44, 제23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55)
1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53, 제20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56)
13. 『대승광백론석론』 권4, 제15장 및 『보리심이상론』 단권, 제6장 중복분류경판(중복78)
14. 『대장엄론경』 권2, 제19,20장 중복분류경판(중복81)
15.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88, 제5·6장 중복분류경판(중복84)
16. 『아비달마순정리론』 권7, 제17,18장 중복분류경판(중복85)
17. 『출요경』 권25, 제17장(단면) 중복분류경판(중복87)
18. 『보유목록』 단권, 1판 양면 중복분류경판(중복110)

이에 따라 해인사대장경(판)은 ‘正藏과 副藏’, ‘元板과 補遺(藏)板’ 등의 명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sup>37)</sup>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원판과 보각경판의 확인한 구별 및 논술의 편의를 위하여, 보유판은 모두 원판분류경판에 편입시켜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에 보이는 보유장경(보유판) 14종 및 『예념미타도량참법』과 『(대장)보유목록』(1865)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유목록판의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7) 현재 해인사대장경판은 法寶殿과 脩多羅殿(藏)에 각각 보존되고 있다.

〈보유목록판의 원문〉

- 祿侈富駕肥輕策功函 入一百卷 入紙八十五牒  
宗鏡錄 一百卷<sup>38)</sup>
- 庭函 入九卷 入紙十一牒十九張  
證道歌肅實 三卷<sup>39)</sup>  
金剛三昧經論 三卷<sup>40)</sup>  
法界圖 四卷<sup>41)</sup>
- 曠遠函 入二十卷 入紙十八牒十六張  
祖堂集 二十卷<sup>42)</sup>
- 邈巖岫函 入三十卷 入紙二十二牒七張  
拈頌 三十卷<sup>43)</sup>
- 杳函 入八卷 入紙十二牒八張  
搜玄記 八卷<sup>44)</sup>
- 冥函 入六卷 入紙十一牒一張  
十句章圓通鈔 二卷  
旨歸章圓通鈔 二卷  
三寶章圓通鈔 二卷
- 治函 入八十卷 入紙十八張<sup>45)</sup>  
釋華嚴教分記圓通鈔 十卷
- 本函 入十卷 入紙十牒八張  
禮念彌陀道場懺法 十卷<sup>46)</sup>
- 於函 入十卷 入紙十二牒七張  
慈悲道場懺法 二十卷<sup>47)</sup>

38) 1247년 전후 남해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禪語錄. ‘心外無佛, 一心’ 등 禪의 要諦.

39) 1248년에 판각됨. 최이의 壽福을 기원함.

40) 1244년, 최이의 처남인 정안이 주도 간행.

41) 분사도감 판각.

42) 南宗界의 대표적 禪書. 1245년 분사도감 판각.

43) [禪門]拈頌: 최이의 서자 만종이 남해 분사도감에서 판각.

44) [華嚴經]搜玄記: 1245년 남해 분사도감 刊記.

45) 冥函의 [華嚴經] 十句章圓通鈔, 旨歸章圓通鈔, 三寶章圓通鈔와 治函의 ‘釋華嚴教分記圓通鈔’는 모두 均如大師의 章疏로서, 1250~1251년에 江華에서 판각됨.

46) 1474년(성종 5), 世祖의 妃 정희왕후(자성대비)가 세종·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왕실 發願 불교의식집. 김수온의 발문이 있고, 인수대비도 시주하며 간행에 관여함. 書寫者, 書師者, 刻手가 모두 一流여서 조선 前期 最高의 목판인쇄도서로 평가됨. 이후 이 도서는 차후 전국 각처에서 간행된 『예념미타도량참법』의 母本이 됨.

47) 목판에 ‘建’자의 마지막 획에 피휘(고려 태조 왕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판각으로 추정됨.

○ 農務函 入二十卷 入紙五十五牒四張

華嚴經探玄記 二十卷<sup>48)</sup>

歲乙丑餘在此參印經事矣 開板校訂宗鏡錄等等五十五部二百三十一卷 錄中不參而亦板章頭不書某字印者印難校者板力 故印事畢後與退庵公謙佑議命割厥氏 舊錄漏者已補某部板頭惟書某冊幾張而不 書某字可缺也 然則前人之事目於此者不誅於我爾

五月下浣 海冥壯雄誌

比丘 希一書<sup>49)</sup>

위 보유목록판의 刊記에 의하면, ‘乙丑年(1865: 조선 고종2) 5월 하순에 海冥壯雄이 대장경 印經에 참여하였을 때, 開板·校訂된 『宗鏡錄』 등 15부 231권이 『대장목록』에 빠져 있고, 板頭에는 천자문 순차가 없으므로 인쇄와 교정이 곤란하기에, 印經이 끝난 뒤 퇴암공과 더불어 의논하고 기궐씨에게 명하여 『대장목록』에서 누락된 것을 補刻해 넣었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위 목록에 제시된 佛典 중 『예념미타도량참법』을 제외한 모든 불전은 고려시대에 판각된 목판들이다. 따라서 해명장웅의 기록을 참작하면, 위 목록의 판본들은 조선 초기에 대장경판들이 해인사로 이안(利安)되었을 때부터 함께 大藏板殿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이며, 판각술이 빠어난 왕실발원판 『예념미타도량참법』도 소중하게 보존할 필요성을 느껴 조선시대에 추가 보존되었던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해명장웅은, 1865년 당시 『대장목록』에는 편입되지 않았으나 대장판당 내에 함께 보존되고 있는 위 목록의 불전들을 목록화하면서

48) 1245년 남해 분사도감 刊記.

49) 위 原文은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204.’에 제시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周知하는 바와 같이, 해인사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의 函次名은 ‘洞函’(千字文 순서의 제639함)에서 종결되고 있다. 그리하여 1865년에 편성된 『(대장)보유목록』은千字文 순서로 제640함에 해당하는 ‘庭函’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목록에서 제640함에 해당하는 ‘庭’함에는 ‘증도가사실’·‘금강삼매경론’·‘(화엄일승)법계도’를 편입하였고, ‘遠(641)’함 다음에 천자문 順의 제642번에 해당하는 ‘綿’함은 생략되고, 바로千字文 順 643~645번에 해당하는 ‘遊·巖·岫’함에 ‘(禪門)拈頌, 30권’을 입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위 『보유목록』에서 『宗鏡錄』, 100권을 입장시킨 ‘祿(千字文 제514번)~功(천자문 제522번)’함에는 기존의 『대장목록』에서 『新集藏音義隨函錄』, 30冊부터 『大方廣佛華嚴經』, 40권이 入藏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아마도 어떤 착오나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계획이 시도되었던 흔적으로 보인다.

해인사대장경에 편입시켰으며, 그 보유관목록의 函次名까지 부여함으로써 판본의 보존·인쇄·간행·활용에도 만전(萬全)을 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여기에서 우리는 ‘해인사대장경판에 대하여 어떤 觀點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再考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해인사대장경판을 그냥 단순하게 ‘문화재 차원에서 하나의 죽은 遺物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보(法寶)’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제로 절 집안(佛家)에서 활용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生動) 귀중한 문화재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위 해명장옹을 비롯한 조선 19세기 후기 佛家(불교인들)에서는 당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던 禪書類와 기타 佛典 및 章疏 등을 해인사대장경의 後尾에 편입하고 그 函次名까지 부여할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대장경에 대한 관점은 三藏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大乘的인 見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세기 후기 불교인들은 대장경의 개념<sup>51)</sup>과 기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단순히 대장경을 경·율·론 三藏에만 국한하지 않고, 禪書와 章疏類 등까지 확대시켜 적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52)</sup> 따라서 해인사대장경은 19세기 후기 당시까지도 실제로 인경(印經)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生動)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문화재였던 것이다. 고(故)로 이와 같은 관점을 見地하면, 분사 대장도감 등에

50) 이로 보아, 19세기 후기 불교인들은 그 당시에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佛典들에 대하여 永久保存의 필요성과 가치를 切感하였기 때문에, 이들 보유경판을 대장경에 편입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당시 해인사대장경판들의 인쇄, 즉 인쇄된 불전(도서)들은 실제로 그 信行에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1) 漢譯 大藏經: 인도에서 전래된 경·율·논 三藏을 漢譯한 사업은 2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4세기말에는 道安의 『종리중경목록』이, 6세기초에는 승우의 『출삼장기집』이 작성되었다. 이들 衆經이나 三藏을 북조의 北魏에서는 ‘一切經’이라 하였고, 남조의 梁에서는 ‘大藏經’이라 하였다. 730년에는 智昇에 의하여 불전목록 『開元釋教錄』 20卷이 편찬되었는데, 여기서는 ‘大小乘 三藏 및 聖賢集傳’으로 분류하면서, 인도의 三藏 이외에 중국인들이 찬술한 佛典들도 대장경에 비로소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장경은 원래 ‘일체경’이라고 흔히 불리웠지만, 北宋의 開寶勅板大藏經(蜀板)이 판각된 이후부터 ‘大藏經’이라는 칭호로 통용되었다.

52)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까지 佛家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禪書들과 章疏類 등도 대장경에 包括시킴으로써, 대장경 그 자체를 불교의 실제 수행과 학습을 위한 텍스트(教科書)로 활용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서 판각된 禪書와 章疏類 및 16세기에 판각된 보유판 등은 해인사대장경의 원판 분류경판에 반드시 편입(編入)되어야 하는 당위성(當爲性)이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2013년에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된 「『內典隨函音疏』<sup>53)</sup> 2판’은 고려 大藏都監에서 乙巳歲(1245)에 奉勅雕造된 것이 분명함에, 이 경판에 대한 전래 사연이나 국가문화재 지정 과정 등은 일체 불문(不問)하고, 응당(應當) 이들 2판의 경판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원판으로 즉시 분류·편입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당연(當然)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sup>54)</sup>

이상과 같은 관점에 따라, 해인사대장경판 중 ‘원판 및 원판분류경판’의 수량은 ‘大藏板 및 보유판(81,117판)’과 1503년에 판각한 「예념미타도량참법(114판)」 그리고 1865년에 편입된 「보유목록(1판)」 및 최근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된 「내전수함음소(2판)」를 편입시켜, 그 판수(板數)들을 모두 아우르면 ‘81,234판’으로 집계할 수 있다.

## 4.2 보각경판

해인사대장경판에서 ‘補刻經板(補刻板)’이라 함은 ‘原板(元板)’의 마모·훼손 및 遺失 등으로 後代에 보완하여 造成한 경판 종류<sup>55)</sup>를 의미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대장경판은 그 목재를 소금물에 삶거나 찌고 잘 건조시켜서 경판을 다듬고 판각한 이후에, 경판에 옷칠(漆)을 하는 등 그 보존을 위하여 萬全을 기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해인사대장경판은 1236년부터 大藏都監 등에서 雕造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850년 이상의 유구(悠久)한 세월이 흘렀고, 사계절에 따른

53) ‘內典’은 佛經을 의미하며 ‘音疏’는 音에 대한 해설이나 해석을 뜻하는 것으로, 「내전수함음소」의 내용은 대승불교의 六波羅蜜多를 설명하는 주석서라 할 수 있으며,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10권에 대한 音義가 수록되어 있다. 卷末에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가 明記되어 있음. 板刻의 형식과 체제 또한 대장도감 여타의 판각과 동일함.

54) 이와 같은 ‘內典隨函音疏」 2판’의 보존은 法寶殿에 安藏(安置)되는 것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 또는 ‘내전수함음소」 2판’의 對象 경전인 「大乘理趣六波羅蜜經」, 즉 板殿 내에서 「대장목록」의 栴函(제545함) 중 「대승이취육바라밀경」 목판 배열의 後尾 위치에, 이 2판을 安置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55) 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4.

은·습도의 변화 및 비바람(風雨) 등에 의하여 경판은 부식(腐蝕)되거나, 또는 잦은 印經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印經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식·훼손된 원판 경판이 발견되면, 지금이라도 그 원판은 당연히 보각경판을 판각하여 대체(代替)하여 주어야만 비로소 ‘대장경의 완결성(完結性)’이라는 순기능(順機能)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sup>56)</sup>

이제 <표 1>의 [개별 보각경판의 시기별 조성목록]에 제시된 보각경판 및 그 수량에 대하여 논급하면 아래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인사대장경판에 대한 보각경판의 시대별 조성은, ① 고려말 1381년(禡王 7)부터 조선 世祖(1455-1468)시대를 지난 1471년까지에 걸쳐 그 1차적으로 ‘30판’의 보각이 이루어졌으며, ② ‘戊辰年’이라고 표기된 보각경판인 戊辰板 ‘2판’, ③ ‘乙酉年’이라고 표기된 보각경판인 乙酉板 ‘2판’, ④ 조선시대의 전시대에 걸친 보각경판 ‘34판’, ⑤ 조선 후기에 보각된 것이 분명한 경판 ‘15판’, ⑥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보각된 乙卯板 ‘18판’과 ⑦ 1937년에 보각된 丁丑板 ‘18판’ 등, 무려 7개 단위의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補刻되면서 모두 ‘118판의 보각경판’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81,300여 판을 상회하는 해인사대장경판 중에서 그 보각경판의 수량이 ‘118판’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로 경이(驚異)로운 일이다.

본 절에서는, 현재 약간의 논의가 필요한, 을묘판(乙卯板: 1915)과 정축판(丁丑板: 1937)에 국한하여 논급하고자 한다.

첫째, 乙卯板은 1915년에 테라우찌 총독이 해인사대장경 3부를 인쇄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 대장경판 정리를 소상히 한 결과 결판(缺板) 18판이 있음을 발견

56) 굴이 蛇足を 덧붙인다면, 개개 보각경판이란 예컨대 대웅전 지붕의 ‘기왓장 하나’ 또는 건물 지붕을 마치고 있는 ‘서까래(椽木)의 일부’에 비유할 수 있다. 즉, 기왓장 한 장이 바람에 날려가거나 깨어졌다면 그 틈새로 빗물이나 누수(漏水)로 인하여 결국 건물 전체가 파손될 것이요, 서까래의 일부가 腐蝕되더라도 해당 부분의 지붕이 내려앉음으로써 건물의 손상될 것은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함(函)에 배치된, 예컨대 「80권 화엄경」 중, 단 한 장의 경판이 결실(缺失)되더라도 그 완결성(完結性)이 상실됨으로써, 결국 해당 도서의 인경(印經)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장경 내 원판분류경판에서 단 1판의 결판(缺板)이라도 발견된다면, 지금이라도 보각경판을 끼워 넣어야 비로소 대장경 본연의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하고 이를 補刻한 경판을 일컫는다.<sup>57)</sup> 당시 印經佛事의 책임을 맡은 오다 간지로(小田幹次郎)가 남긴 글에 의하면,

판목 정리 결과, 缺板 18판이 있음을 발견하고, 곧 보충에 착수하였다. 이 경판 印本은 해인사 기타 조선 내의 사찰에 다소 잔재함으로써 전부 조사하였으나, 近年 일본은 다 결판 부분이 모두 결정(缺丁)되어 있었다. 다만 강원도 월정사(月精寺) 및 회양군 [금강산] 정양사(正陽寺)에 옛 일본 몇 책이 있었는데, 이에 의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 용재(用材)는 서울 부근 수개 처에서 배나무를 찍어 작판(作板)하고, ……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에 의탁하여 증(蒸)진조법을 행하고, **한국인 중 조각에 교묘한 사람 몇 명을 가려 뽑아 새기게 하고**, 측면에 견출을 새기고, 전면에 옷칠을 하고, 네 모퉁이에 동제(銅製) 금구를 처서, 원판의 예에 의하여 ‘大正四年彫刻’이라 새기고 그 보충을 명시하였다.<sup>58)</sup>

라 하였다. 이로 보아 「대반야경」 玄·黃·宇·宙 함 등 12個函에서 12판, 「아비달마대비바사론」 등 6개 불전의 각 함에서 6판<sup>59)</sup> 등 총 18個函에서 각 1판씩 결판된 18판의 결판을 보각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위 을묘판의 보각은, 비록 일본인에 의하여 그 결판이 조사되고 보각이 주도되었으나, 결판의 원본을 우리나라의 월정사와 정양사에서 찾아내었고, 판각의 재료인 목판도 서울 부근의 배나무를 사용하였으며, 그 판각의 각수(刻手)도 한국인 중에서 선발하여 새기게 하였으며, 대장경판의 전통적인 보존방법 중의 하나인 옷칠(漆)을 하는 등 그 조성 또한 대장경 원판의 조성방법을 엄격하게 준수(遵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을묘판 보각은, 문화재 보수의 차원에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12개의 각 함 중에서 한판씩 결판된 18판을 한국인 각수 등에 의하여 정성스레 보각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올바르고 우수한 보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보각된 경판이라 하더라도, 이들 18판의 보각경판은 ‘해인사대

57)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판 연구』, 139.

58) 『小田幹次郎遺稿』, 68-69.;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판 연구』, 140.

59) 결판 보각의 세부내용은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판 연구』, 141.’ 참조.

장경판의 전체 수량의 집계’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국 불교의 삼보(三寶) 중 법보(法寶)로서의 해인사대장경판이 ‘완결성(完結性)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둘째, 丁丑板은 1937년에, 당시 경성대학 교수였던 일본인 다카하시(高橋亨) 교수가 해인사대장경을 印經하였을 때 발견한 ‘18판’의 결판(缺板)을 새로 보강한 것을 말한다.<sup>60)</sup>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다카하시는

이상 18판은 이미 분실되어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이 부분을 世祖朝 인본을 소장한 금강산 정양사와 東京 增上寺의 고려대장경에 의하여 베끼고, 명필 김돈희(金敦熙)에게 부탁하여 板下를 쓰게 하고 이를 새겼다. 그러나, 내가 이 새로 새긴 18판 판목을 살펴보니, 김돈희의 명필로도 시대의 700년의 상하가 있기 때문에 문자의 기운과 체격이 원본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엔 이 보충판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한국·일본에서 널리 찾아, 이 결판부의 원본을 얻어 이를 촬영하여 板下로 하고, 나무에 새겨 거의 완전히 본 대장경판을 복구하고자 결심하고, 이를 決行하였다.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更函 大藏經補遺 終丁, 治函 釋教分記圓通鈔 一卷 九丁 十丁’ 2매는 벌써 정양사본이나 증상사본에도 결판되어 있었다.

補刻經板은 학무국의 손을 지나 널리 한국 내의 大刹 및 東京 增上寺에 조회해 본 결과, 해인사에 보관중이던 破本 古印經에서 2면, 금강산 정양사에서 16면, 증상사에서 8면을 구하고, 한국 내 사찰본은 서울 조계사에, 증상사본은 동경 大冢巧藝社에 부탁하여 高로타이프[コロタイプ: collotype; 玻璃(琉璃)版]를 얻어 이를 板下하고, 梓材를 구하여 판재로 하고, 다행히 몇 명의 전통(前代) 木板工을 얻어 이를 새겨 전부 완성하였다.<sup>61)</sup>

라 하였다. 이 내용에 입각하면, 금강산 정양사 등에서 조선 초기인 세조(世祖: 1455-1468) 시대에 인경한 해인사대장경의 인본을 참조하고, 결판(缺板)된 경판의 원본을 한국의 古刹과 일본에서 널리 찾아서 해당 부분의 古印經 등을 얻고, 이들을 板下本으로 하여 그 판각을 決行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62)</sup> 그리하여 丁丑

60)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140.  
61) 高橋亨, “高麗大藏經板 印出顛末,” 『朝鮮學報』 제2집, 215-217.;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140-141. 정측판 보각의 세부 내용은 ‘上揭書, 제142쪽’에 제시되어 있음.  
62) 그리고 『대장목록』의 更函과 治函 해당하는 경판 중 그 缺板 2판(枚)을 더 밝히고 있다.

板의 보각경판은 해인사(2면)·금강산 정양사(16면)·일본 증상사(8면) 등에서 전래되던 古印經의 해당부분들을 얻어서 板下로 삼고, 刻手는 한국 전통(前代)의 木板工들을 구하여 그 판각을 完成하였음을 明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축판(1937) 보각경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다카하시 교수가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해인사와 정양사 등에서 조선시대 古印經 등을 板下로 함으로써 그 엄정(嚴正)을 기하였고, 각수 또한 한국 전통의 木板工들이 직접 판각하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 세조시대의 보각경판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축판 보각경판이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 집계에서 제외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인사경판 중 보각경판은, ① 고려말기(1381)부터 조선시대 간경도감 운영 전후의 '30판', ② 무진판(2판) 및 을유판(1판)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보각경판 '37판', ③ 조선후기의 보각경판이라 집계된 '15판', ④ 20세기에 들어와서 보각된 을묘판(18판)과 정축판(18판)을 합친 '36판'들을 도합(都合)하면 '118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장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은 '원판분류경판 81,234판'과 '보각경판 118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총수량(總數量)을 재지정할 때에는 이들 원판분류경판(81,234판)과 보각경판(118판)들을 모두 종합·집계(綜合集計)한 숫자인 '81,352판'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 5.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과 더불어 '세계기록유산'에는 팔만대장경판 및 '해인사 사간장경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반면 우리의 현실에서 '해인사 전체 사간장경판'은 국가문화재 지정에서 소외(疏外)되

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도 해인사 사간장경판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이 수반(隨伴)되어야 할 필요성도 논급하였다.

둘째, 제2장 ‘해인사대장경의 근원’에서는, 해인사대장경의 뿌리(根源)는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에 있음을 논술했다. 그리하여 해인사대장경(再雕大藏經)은 鎭兵大藏經(初雕大藏經)의 護國精神을 이어받아 판각되었으며, 조선 초기에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이안(移安)되어 현재까지 대장판전(海印寺大藏板殿) 내부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존(保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3장 ‘해인사대장경판의 기능 및 가치’에서는, 그 기능은 ① 國家守護의 기능, ② 三藏結集의 累加性的 기능, ③ 대장경으로서의 완결성(完結性)의 기능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인사대장경(판)은 현존하는 대장경판 중 世界最古이며, 그 교감(校勘)이 엄정하여, 19·20세기 대장경의 신할자본에 의한 간행에서 일본 縮刷藏(1885)이나 大正藏(1934)을 간행하는데 原本(底本: 原稿)이 되었다는 점 등에서 그 큰 가치와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해인사대장경판은, ① 12세기에 완성되었으나 몽고군에 의하여 소실(燒失)된 鎭兵大藏經을 다시 復元하여 판각하고, ② 高宗 때의 再雕時에 새로 入藏시킨 원판(元板: 原板)류, 그리고 ③ 고려·조선시대 등의 보유경판(補遺經板) 및 ④ 보각경판(補刻經板) 등이 어우러져 시대적인 누적성의 특징도 지님으로써, 이와 같은 4종류의 경판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경으로서의 완결성(完結性)’이라는 순기능(順機能)을 발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넷째, 제4장 ‘해인사대장경판 수량 재지정의 문제’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은 ‘원판분류경판 81,234판’과 ‘보각경판 118판’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총수량(總數量)은 ‘81,352판’으로 집계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1) 원판분류경판에는 13세기에 완성된 大藏[都監]板에 조선시대의 보유경판 14종이 편입되어서 ‘81,117판’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1503년(연산군9)에 편입된 『예념미타도량참법』 10권의 ‘114판’ 및 乙丑板(1865년)의 『補遺目錄』 1권 ‘1판’이 어우러지고, 또한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內典隨函音疏』 ‘2판’을 편입시킴으로써, 원판분류경판은 모두 ‘81,234판’으로 集計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19세기 불교인들은 대장경의 개념과 기능을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즉 조선시대의 불교인들은 기존의 대장판(原板)에 당시 긴급하게 활용하던 章疏와 禪書 등에 대하여 그 函次名까지 부여하여서 기존의 원판 後尾에 보유경판(補遺板: 副藏)을 편입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장경을 불교의 실제 수행과 학습을 위한 印經用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해인사대장경판은 19세기 후기 당시에도 살아 움직이는(生動) 불교 텍스트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고(故)로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立脚)하면, 16세기 등에서 판각된 보유경판도 원판분류경판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당위성(當爲性)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2) 보각경판은 ① 고려말기(1381)부터 조선시대 간경도감 운영 전후의 ‘30판’, ② 무진판(2판) 및 을유판(1판)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보각경판 ‘37판’, ③ 조선후기의 보각경판이라 집계된 ‘15판’, ④ 20세기에 들어와서 보각된 을묘판(18판)과 정축판(18판)을 합친 ‘36판’을 도합(都合)하면, 모두 ‘118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해인사대장경판은 1236년부터 大藏都監 등에서 雕造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850년 이상의 유구(悠久)한 세월이 흘렀고, 잦은 印經과 사계절에 따른 온습도의 변화 및 비바람(風雨) 등에 의하여 경판은 훼손되거나 부식(腐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보존이나 印經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식·훼손된 경판이 발견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元板은 당연히 보각경판을 마련하여 대체하여 주어야만 비로소 ‘대장경의 完結性’이라는 順機能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임을 주목하였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조선 후기나 일제 강점기에 보각된 경판들도 ‘대장경의 완결성’이라는 순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각경판 또한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 집계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3) 그리하여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數量)을 재지정할 때에는, 이들 원판분류경판과 보각경판의 숫자들을 종합한 총계(總計), 즉 그 총수량(總數量)인 ‘81,352판’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史料되었다.

## <참고문헌>

- 『高麗史』 第129卷. 列傳第42, 崔忠獻[崔怡·崔沆·崔埴]條. (高宗41年條).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1&arid=3&ContentNumber=2111&pageNumber=2111>>.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1,00320000,38&queryText=\(\(V\\_KDCD=11\)\)%20<and>\(\(\(V\\_NO%20>=32\)<and>\(V\\_NO%20<=%209999\)\)\)>](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1,00320000,38&queryText=((V_KDCD=11))%20<and>(((V_NO%20>=32)<and>(V_NO%20<=%209999)))>)>.
- 高橋亨. “高麗大藏經板 印出顛末.” 『朝鮮學報』 제2집. 215-217. ;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140-141. 재인용.
-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5-96.
-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조조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1호(2012. 2). 263-288.
- 常盤大定. “大藏經彫印攷.” 『哲學雜誌』 28-321(1913). 1164. ;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21. 再引用.
- 徐首生 著, 南權熙 輔·編.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사간관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 小田幹治郎. 『大藏經印刷終了報告』(1915). 『小田幹治郎遺稿』(1931).
- 유부현. “대정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과의 관계.” 『2015년 한국서지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 -일시: 2015년 11월 14일(토),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주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한국서지학회, 37-38.
- 李奎報. “大藏刻版君臣祈告文(丁酉年行).” 『東國李相國集』 제25권, 18-20(張).  
<<http://k5000.nurimedia.co.kr/pContent/?svcid=KR&proid=5&arid=274&ContentNumber=1210&pagenumber=1247>>.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관한 고찰

<[http://k5000.nurimedia.co.kr/pContent/Content\\_preview.asp?arid=274&proid=5&pageNumber=1247&ViewType=realimage&imgname=](http://k5000.nurimedia.co.kr/pContent/Content_preview.asp?arid=274&proid=5&pageNumber=1247&ViewType=realimage&imgname=)>.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第48冊.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6. 3-17.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 『東洋學報』 第13卷 3號(大正12年(1923) 8月), 307-362. ;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4. 61. 재인용.

최영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합천: 해인사, 2015.

해인사 홈페이지: <<http://www.haeinsa.or.kr/home.html>>.

